
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2]

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(제9조 관련)

1.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
 - 가. 견인 도르래(Traction sheave)
 - 나. 비상전원공급장치
 - 다. 자동구출운전장치
 - 라. 주행안내 레일(Guide rail)
 - 마. 출입문 개폐장치
 - 바. 출입문 제어장치
 - 사. 출입문 안내수단(Guides)
2.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
 - 가. 골조 구조물(Truss)
 - 나. 디딤판 경계틀(Demarcation)
 - 다.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(Skirt deflector)
 - 라. 손잡이(Handrail system)
 - 마. 끼임방지 빗(Comb)
3.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